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1호 2025. 2. 17. (월)

고시 · 공고

○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2.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른 세입 및 지원의 범위 등 특별회계 운영 및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설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특별회계 설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세입·세출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제81조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5. 2. 12. ~ 2025. 3. 9. [25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9일까지 목포시장(도시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8292),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5층(남교동) 목포시청 도시유산과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유산과(☎ 061-270-344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성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및 집행 잔액, 부과·징수된 과태료,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